

5. 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 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중 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 전문의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 이라고 칭한다)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응시 자격

[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의 제 9 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자

[제 3 조] 시험 과목 및 시험 방법

1. 자격시험의 과목은 소아청소년 심장학으로 하며, 소아청소년 심장 내과학 분야와 소아청소년 심장 외과학 분야의 문제를 구분해서 출제한다.
2. 자격시험은 1 차 시험과 2 차 시험으로 구분해서 실시하며, 1 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 차 시험을 실시한다.
3. 1 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되며 주관식과 객관식을 혼용하여 실시하고, 2 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 점수는 각각 100 점을 만점으로 한다.
4. 1 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 1, 2 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여야 하며, 1 차 시험에 합격하고 2 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 1 회에 한하여 1 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 4 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1. 세부 전문의 자격시험은 2 년에 한번 격년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년도 이사회의 결의로 연속하여 다음 연도에 시행할 수 있으나 3년 연속으로 시행할 수는 없다.
2.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일시, 장소, 제출 서류의 종류, 응시원서 및 서류 제출 기한을 시험 실시 2 개월 전에 대한소아심장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한다.

[제 5 조]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 전문의 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부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 및 수험표 (별지 제 13 호 서식)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3. 전임의 수련 증명서 (및 파견 수련 증명서) (별지 제 14 호 서식)

4. 연수 평점 기록지 (별지 제 15 호 서식) 및 관련 증빙 서류
5. 연수 평점 이수 증명서 (별지 제 16 호 서식)
6. 전임의 수련 평가서 (별지 제 17 호 서식) (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지도전문의 가 작성하여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7. 전임의 수련 기록부 (별지 제 4 호 서식)
8. 소아청소년 심장학 분야 실무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필요 시 제출)
9. 수련기간 동안 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정규 학술지 (PubMed, Scopus 에 검색되는 국제학술지 혹은 학술진흥연구재단에 등재된 국내학술지)의 제 1 저자로서 게재되었거나 게재 승인을 획득한 논문(원저 또는 증례보고)의 사본 1 부
10. 사진 3 매 (* 6 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칼라 명함판 사진; 2 매는 응시 원서와 수험표에 부착하고 1 매는 별도로 제출)

[제 6 조] 고시 위원의 선출

1. 세부 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및 선택, 시험의 감독 및 채점을 담당할 위원을 선출한다.
2. 고시 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시험문제의 출제, 선택, 감독 및 채점 위원의 중복을 가능한 한 피하여 선출하도록 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 위원의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시험문제의 출제, 선택, 감독 및 채점

1. 시험문제의 출제, 선택, 감독 및 채점은 세부 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시험문제의 출제 위원은 시험문제와 모범답안을 밀봉 날인한 후에 세부 전문의 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시험문제의 선택 위원은 지정된 장소에서 문제를 선택하고 교정하며, 선택된 최종 시험문제와 모범답안을 세부 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감독 하에 인쇄하여 밀봉 보관하도록 한다.
4. 시험 답안의 채점은 세부 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감독 하에 채점 위원이 실시하며, 채점 완료 즉시 확인하고 날인한 후에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장에게 시험답안지와 성적표를 제출한다.
5. 세부 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출제 위원, 선택 위원, 감독 위원, 채점 위원, 인쇄 종사자 및 시험업무 보조자에 대하여 비밀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8 조] 합격자의 결정

1. 1 차 및 2 차 시험의 합격 결정은 각각 60 점 이상으로 한다. (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 1 차 시험과 2 차 시험의 시험 성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세부 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장이 확정 발표한다.
3.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세부 전문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 9 조] 부정 행위자의 제재

1.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나 자격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 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자격 인정의 유효 기간

1. 자격 인정의 유효 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 년간으로 한다.
2. 매 5 년 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 전문의 자격 갱신에 관한 시행 규칙]을 따른다.

[부칙]

1. 이 규칙은 2006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2. 1 차 개정된 규칙은 2011 년 3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3. 2 차 개정된 규칙은 2016 년 3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4. 3 차 개정된 규칙은 2019 년 11 월 16 일부터 적용한다.
5. 4 차 개정된 규정은 2020 년 6 월 25 일부터 적용한다.
6. 5 차 개정된 규정은 2021 년 8 월 24 일부터 적용한다.